#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밀알 행복한일터의 2차 추경 예산(안) 총액은 세입 372,956,849원, 세출 372,956,849원으로 한다.

제 2 조 1. 세입·세출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.(관 또는 항 단위)

2. 세입의 주요 재원

| 관/항 | 사업수입 | 보조금수입 | 후원금수입 | 전입금 | 이월금 | 잡수입 | 총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예산 | 99,000,000원 | 235,755,000원 | 15,675,000원 | 2,000,000원 | 18,512,400원 | 2,014,449원 | 372,956,849 |

3. 세출의 주요 재원

| 관/항 | 사무비 | 재산조성비 | 사업비 | 잡지출 | 예비비 및 기타 | 보조금반환 | 총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예산 | 230,197,000원 | 9,610,000원 | 132,329,000원 | 200,000원 | 606,154원 | 14,695원 | 372,956,849 |

제 3 조 세입·세출 예산 명세서는 붙임 「2020년 행복한일터 세입·세출 2차 추경 예산(안)」과 같다.

제 4 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 5 조 예산의 전용에 있어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, 제16조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·항·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대표이사(또는 시설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제 6 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및 후원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7 조 제5조와 제6조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, 법인이사회의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조 기타 회계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며 그 외 예산 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.

# 2020년 2차 추경 예산 내용

<세입> (단위 : 원)

| 구분 | 과목 | | | 예산액 | 전용액 | 예산현액 | 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관 | 항 | 목 | | | | |
| 세입 | 후원금수입 | 후원금수입 | 지정후원금 | 11,675,000 | 3,000,000 | 14,675,000 | - 2020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원한 여름나기 에어컨지원사업 선정 |
| | 잡수입 | 잡수입 | 기타예금이자수입 | 0 | 14,449 | 14,449 | - 2019년도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지원사업 이자반납금 |

<세출> (단위 : 원)

| 구분 | 과목 | | | 예산액 | 전용액 | 예산현액 | 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관 | 항 | 목 | | | | |
| 세출 | 재산조성비 | 시설비 | 자산취득비 | 960,000 | 3,000,000 | 3,960,000 | - 2020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원한 여름나기 에어컨지원사업 선정 |
| | 보조금반환 | 보조금반환 | 보조금반환 | 246 | 14,449 | 14,695 | - 2019년도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지원사업 이자반납금 |